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# 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07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|   |        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        |

부록 제697호 2012. 7. 9.(월)

## 【규 칙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99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) ..... 1

## 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-54호(지적기준점 성과고시) ..... 8

## 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529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) ..... 9
-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고 제2012-14호(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..... 18

|   |  |  |  |  |  |  |  |
|-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 |  |  |  |  |  |  |
| 람 |  |  |  |  |  |  |  |

## 인천광역시연수규칙(공포)

| 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천광역시연수구<br>지방공무원 징계<br>양정에 관한 규칙<br>일부개정규칙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2011.11.01)으로 “음주운전 3진 아웃제”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,</li> <li>○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에 대한 비위유형을 추가하고,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음주운전에 대한 독자적·구체적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비위의 유형을 별도 추가(별표 1)</li> <li>-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(별표 1의3)</li> <li>※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, 파면의 배제징계(3진 아웃제)도입</li> </ul> </li> <li>○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성폭력, 성희롱 외에 성매매 비위 유형을 추가(별표 1)</li> </ul> </li> <li>○ 금품·향응 수수 등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구체화·세분화(별표 1의2)</li> </ul> |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

2012. 7. 9.

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9호

##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”을 “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,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범죄”를 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범죄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범죄”를 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범죄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별표4와 별표5를” 을 “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” 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를 별표 1의2로, 별표 5를 별표 1의3으로,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횡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)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| 비위의 정도 및<br>과실 여부<br>비위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위 정도가 심하고<br>고의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위 정도가 심하고<br>중과실이거나,<br>비위 정도가 약하고<br>고의가 있는 경우   | 비위 정도가 심하고<br>경과실이거나,<br>비위 정도가 약하고<br>중과실인 경우 | 비위 정도가 약하고<br>경과실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성실의무 위반<br>가. 공금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<br>나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<br>다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<br>라.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<br>파면<br>파면<br>파면-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-해임<br>해임<br>해임<br>강등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임-강등<br>강등-정직<br>강등-정직<br>감봉  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<br>감봉<br>감봉-견책<br>견책                |
| 2. 복종의무 위반<br>가.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<br>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<br>나.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<br>파면-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임<br>강등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등-정직<br>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<br>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직장 이탈 금지 위반<br>가.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<br>나. 무단결근<br>다.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<br>파면<br>파면-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임<br>해임-강등<br>강등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등-정직<br>정직-감봉<br>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<br>견책<br>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친절·공정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-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등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비밀 엄수 의무 위반<br>가. 비밀의 누설·유출<br>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<br>다.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<br>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<br>무단방치<br>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<br>관리 소홀 등<br>마.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| 파면<br>파면-해임<br>파면-해임<br>파면-해임<br>파면-해임<br>파면-해임 | 파면-해임<br>해임-강등<br>강등-정직<br>강등-정직<br>강등-정직<br>강등-정직 | 강등-정직<br>정직<br>정직-감봉<br>감봉<br>감봉<br>감봉         | 감봉-견책<br>감봉-견책<br>감봉-견책<br>견책<br>견책<br>견책 |
| 6. 청렴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별표 1의2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<br>가. 성폭력(미성년자)<br>나. 성폭력<br>다. 성희롱·성매매<br>라. 음주운전<br>마.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<br>파면<br>파면-해임<br>파면-해임<br>파면-해임             | 파면-해임<br>해임<br>해임-강등<br>해임-강등<br>강등-정직             | 해임-강등<br>강등-정직<br>정직-감봉<br>감봉<br>감봉            | 정직-감봉<br>감봉-견책<br>견책<br>견책<br>견책          |
| 8.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-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등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정치운동 금지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등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집단행위 금지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등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비고 : 제7호에서 “성희롱”이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, “성매매”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.

[별표 1의2]

##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| 징 계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징 계 기 준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| 해임<br>이상 | 강등<br>이상 | 정직<br>이상 | 감봉<br>이상 | 견책<br>이상 |
| 1. 직무관련자로부터<br>의례적인 금품이나<br>향응 등 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50만원 미만(수동)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50만원 미만(능동)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수동)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능동)     |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)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(수동·능동) |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) 300만원 이상(수동·능동)          | ○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2. 직무와 관련하여<br>금품이나 향응 등을<br>수수하고,<br>위법·부당한 처분을<br>하지 않은 경우 | 1) 50만원 미만(수동)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50만원 미만(능동)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(수동·능동)  |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) 100만원 이상(수동·능동)          | ○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3. 직무와 관련하여<br>금품이나 향응 등을<br>수수하고,<br>위법·부당한 처분을<br>한 경우     | 1) 50만원 미만(수동)              |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50만원 미만(능동)              | ○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50만원 이상(수동)              | ○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
※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가·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.

[별표 1의3]

음주운전 징계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| 유 형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징계요구<br>(처리기준) | 징계기준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징계            | 견책-감봉 | 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.<br>2.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<br>3. “중상해”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,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·중대변형,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·불치의 부상·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·질병을 말한다.<br>4.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<br>- 면허정지 : 중징계<br>- 면허취소 :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<br>5.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(사면된 전력포함)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나 징계양정 결정시 참조한다.<br>6.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횟수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중 사면된 전력도 포함한다. |
|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·중징계          | 감봉-정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감봉-정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징계            | 정직-강등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해임-파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               | 정직-파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강등-해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정직-해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정직-해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1의4]

###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| 비위의 정도 및<br>과실 여부<br>비위의 유형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<br>고의가 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<br>중과실이거나, 비위의<br>정도가 약하고 고의가<br>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<br>경과실이거나, 비위의<br>정도가 약하고 중과실<br>인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,<br>경과실인 경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금품 향응 수수                 | 금품향응<br>수수액의<br>4~5배     | 금품향응<br>수수액의<br>3~4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품향응<br>수수액의<br>2~3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품향응<br>수수액의<br>1~2배    |
| 2. 공금 횡령·유용                 | 공금<br>횡령·유용액의<br>3~5배    | 공금<br>횡령·유용액의<br>2~3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금<br>횡령·유용액의<br>2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금<br>횡령·유용액의<br>1배     |

※ 비교

-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(整數)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(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, 벌금·변상금·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·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(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, 형량 및 실행,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.



# 지적기준점 성과고시

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2 - 54호
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 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2012년 7월 9일

##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| 기준점의<br>번 호 | 세계측지계      |            | 중부좌표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리좌표     |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| X          | Y          | X         | Y    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| Y         |     |
| 연수보16       | 534863.662 | 172428.349 | 434557.91 | 172358.10                | -1679.19 | -15825.54 | 재설치 |
| 325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262.91 | 171227.22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389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4047.99 | 170377.03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390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845.12 | 170435.81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391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158.27 | 171013.82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392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186.01 | 171041.42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395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119.53 | 172583.93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401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304.40 | 171201.21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406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341.09 | 171136.91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505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387.76 | 171103.79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506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417.22 | 171048.36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411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955.22 | 170491.78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551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129.42 | 170780.33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946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3160.56 | 170737.75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947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4927.08 | 172133.07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1062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4983.74 | 172083.39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1037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182.06 | 171831.04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재설치 |
| 935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884.65 | 172154.27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1017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906.87 | 170646.16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1032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6017.72 | 170466.67                | -219.34  | -17719.24 | 신설  |
| 1210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062.74 | 170685.51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1220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073.93 | 170502.71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1234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100.61 | 170577.69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1283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5421.97 | 173098.49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1408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6283.87 | 169944.98                | 45.97    | -18241.34 | 신설  |
| 1423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6521.17 | 170126.92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신설  |
| 2373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6520.81 | 168855.72                | 281.23   | -19331.08 | 신설  |
| 2450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6577.31 | 168725.26                | 337.56   | -19461.60 | 신설  |
| 2455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436549.66 | 168788.97                | 309.99   | -19397.86 | 신설  |
| 기준점의 명칭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|
|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세계측지계, 중부좌표, 가리좌표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|
| 토지소재지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|
| 설치일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2012. 6. 19, 2012. 6. 29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|
| 표지의 재질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철재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|
| 측량성과 보관장소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|

##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-529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7월 9일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####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## 1. 개정이유

- 다자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로 저출산·고령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조성하고자 함
- 「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」 개정에 따라 연수구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

##### 2. 개정 주요내용

- 제명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장려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」를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」로 함
- 시비 보조사업인 출산축하금(또는 출산장려금)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내용, 방법 및 절차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준용함

- 지원대상자로서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
- 신청일을 ‘출생일 기준 3월 이내 신청’ 에서 ‘출생신고 또는 입양 신고 후 3월 이내 신청’ 으로 출산장려금 신청 기산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신청기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함
- 제출서류 중 ‘각서’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공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 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【(참고: 가정복지과장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Tel. 032-749-6911~3, Fax. 032-810-7839, [www.yeonsu.go.kr](http://www.yeonsu.go.kr)】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,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### 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##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**전부개정 조례안**

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제1항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 양육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셋째아 이후 출생아"란 한 가정에 태어난 셋째부터의 출생아를 말하며, '입양아'를 포함한다.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를 포함한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말한다.
2. "입양아"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한 '입양아동' 중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'영유아'를 말한다.
3. "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(이하 '아동양육비'라 한다)"란 인천광역시연수구(이하 "구"라 한다)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

이후 출생아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.

4. “지원대상자”란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친권자, 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5. “신청인”이란 친권자 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신청인의 범위)** ①아동양육비 신청인은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친권자 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를 말하며 수임자를 포함한다.

②수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신청기한 이전에 친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구 관내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고 주거를 같이 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친권자를 대행할 수 있다.

**제4조(지원기준)** ①구청장은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지원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한다.

② 셋째 이후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.

**제5조(지원대상자의 안내)** 구청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원신청)**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

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절차)**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신고사항 및 친권자의 주소
2. 관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일자 및 가족사항
3.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
4.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

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,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달 5일한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,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아동양육비를 매월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. 단,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.

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양육비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환수조치)**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아동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
**제9조(지원중단)** ① 지원대상자의 전출·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을 중단하되, 중단사유 발생월 기준 1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.

② 국가나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

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금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양육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대장 등 비치) 동장과 구청장은 아동양육비 신청(지원)대장 (별지 제 2호 서식)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【별지 제1호】**

##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

(접수번호 : 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친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           |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           |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|         |
| 출생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|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친권자와 관계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생순위(단태아)   |        | 출생일             | 년 월 일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생순위(다태아)   | 자녀 중 제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|        | 번지              | 아파트 동 호 |
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택          |        | H.P             | 이메일     |
| 신청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아동양육비 ( ) 회차/ 회 |         |
| 입금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은행명 ( )     |        | 계좌번호 ( )        | 예금주 ( ) |
| <p>「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」 제3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.</p> <p>신 청 인 주 소 :</p> <p>출생아와의 관계 :</p> <p>신 청 인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년 월 일</p> <p>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</p>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첨부서류 : 친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※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.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|
| 친 권 자       | 성명          |    | 주민등록번호 |      |
| 확인사항        | 친 권 자 주 소 : |    |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관내 전입 일자 :  | 년  | 월      | 일    |
|             | 출 생 아 성 명 : |    |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출생아생년월일 :   | 년  | 월      | 일    |
|             | 출생아출생순위 :   |    | 째      |      |
| 공부담당<br>확인자 | 소속          | 직급 | 성명     | (서명) |
| 확인자 의견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|
| 확 인 자       | 소속          | 직급 | 성명     | (서명) |



【별지 제2호】

## 아동양육비 신청(지원)대장

[illegible]

**【별지 제3호】**

##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위임장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|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|-------------|---|
| 위임자<br>(영유아의 부<br>또는 모) | 성    | 명 |   | 주민등록번호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  |   | 주           | 소 |
| 수임자<br>(출산장려금<br>수령자)   | 성    | 명 |   | 주민등록번호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  |   | 위임자와의<br>관계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   |   | 소 |             |   |

위임자(아동의 부 또는 모)는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 신청을 영유아를 대리양육하고 있는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위 임 자      : 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본인 확인 연락처      :

※ 확인자료 : 위임자(아동의 부 또는 모)와 수임자(신청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
※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한다(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제8조)

##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7월 5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

#### 1. 제안이유

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조문 인용 정비(안 제15조의2)
  - 제15조의1 내용 중 “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“를 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“로 함.
  - 1호 “영업시간 제한”을 “영업시간”으로 하고, “까지 한다”를 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”로 함.
  - 2호 “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

업을 한다”를 “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”로 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제출처

- 주소 : (우 406-723)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(동춘동923-5)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

- 전화번호 : 032)810-5326 (FAX 810-5319)

### 4. 붙임 『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 내용 중 “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”를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5조의2 1호 “영업시간 제한”을 “영업시간”으로 하고, “까지 한다.”를 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5조의2 2호 “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.”를 “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5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<u>다음 각 호와 같이</u>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 | 제15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.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| 1. <u>영업시간</u>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<u>한다</u>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<u>영업시간</u> -----<br>-----<br>-----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의무휴업일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,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. 다만,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-----<br>-----<br>-----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. -----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